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2,580,725	15,377,422
일반회계	485,782,481	14,573,474
특별회계	26,798,244	803,947
기타특별회계	26,798,244	803,9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8,361	8,951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209,133	96,274
수질개선 특별회계	60,233	1,80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367,417	41,02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49,641	7,489
주차장 특별회계	2,194,576	65,837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	0
기반시설 특별회계	269,040	8,0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9,149,841	574,49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446,98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